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3GPP OP/PCG 회의 요약

이봉국

TTA 표준본부 전파·방송표준팀장

1. 회의개요

- 일시 : 2000년 7월 16~19일
 - 7월 16일 : 수석대표 회의(위규진)
재정감사 회의(이봉국)
 - 7월 17일 : 사업조정그룹(PCG) 회의
 - 7월 18~19일 : 기관참가자(OP) 회의
- 장소 : 중국 북경 King Wing(京瑞)호텔 회의장
- 참가자 : 위규진(전파연구소 공업연구관 /TTAPG01 의장), 김영균(삼성전자 연구소 전무), 박상근(삼성전자 전무), 유창호(에릭슨코리아 부장), 이옥연(ETRI 정보보호기반연구팀장), 이봉국(TTA 팀장) 등 6명. 기타 유럽(ETSI), 일본(ARIB 및 TTC), 중국(CWTS), 미국(TIA 및 T1), 시장대표참가자(MRP) 등 80여 명 참가.

2. 주요 회의내용

- 현재까지 ETSI 내부에서 수행중이던 GSM 표준화 작업을 미국의 제안으로 3GPP에서 담당하기로 함. 단,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그룹에는 참가하지 않고 비용


부담도 하지 않음. 그러나 일부 회사가 옵서버로 참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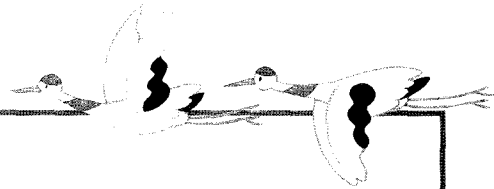
- 3GIP(유럽 주도) 및 MWIP(미국 주도)의 2개 IP 망 구조 관련단체가 새로이 3GPP에 MRP로 참가함.
- 인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GPP2와의 로밍을 고려하여 3GPP2와도 협력하기로 함.
- 개발된 정보보호 알고리즘(F8, F9)은 8월 16일에 모든 표준화 단체가 공동으로 web에 게시하여 공개토록 하되, 사용자(사업자, 제조업체)는 각 표준화 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아 사용하도록 함.
-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와의 협력을 위하여 각 표준화 단체의 의장들이 공동으로 IETF와 협의하기로 함. (3GPP2 포함)
- 측정기 오차에 대한 개념정립 필요성 유무에 대한 논의결과, ITU에서 이를 다루도록 함.
- ITU-R 무선접속 규격개정을 위하여 2000년 6월 규격(Version)을 각 표준화 단체가 ITU에 제출하기로 함.
- IPR 등록(Register)을 각 표준화 단체의

web을 인용하여 3GPP web에 공시함(우리나라는 아직 TTA에 이러한 Register가 없으므로 후속조치 필요함, 현재 제출중인 IPR에 대하여 검토 필요).

- 무선접속 규격작업을 위하여, 3GPP 사무국에서 근무할 전문가 1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 중국 관련
 - 회의 개최시 중국 우전성 표준국장이 인

사말을 통해, 중국형 TDD의 개발과 표준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2001년에는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고려할 계획임을 밝힘.

- W-CDMA 시험장비를 일본 NEC에서 도입중임.
- 7월 20일 3GPP 각 그룹 의장들이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중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WIPO, 특허관련 국제간 협력 주도

세계지적재산권기(WIPO)이 인터넷 시대에 대응한 특허 제도의 국제간 협력을 위해 각국간 조정에 나선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WIPO는 특허출원 수속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특허법 조약」이 올 6월 채택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내부의 상설위원회에서 각국간 특허제도의 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이 상설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특허 심사방법의 확립 △각국 특허당국에 의한 심사결과의 공유 △가맹 각국에서 통용하는 「세계 특허」제도 창설의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WIPO는 이미 지난 80~90년대에 걸쳐 특허제도의 국제적 협의를 중재했으나 각국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WIPO의 이번 조정은 「글로벌화의 진전」을 위한 재도전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는 특허 심사에서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 유무가 권리를 인정받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각국은 그 신규성 여부를 주로 학술 잡지 및 문헌에 게재된 선행 기술정보를 조사해 판단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도 특허의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WIPO는 인터넷에 특별한 규약을 적용해 특허심사 방법으로서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인터넷 공개기술을 특허 판단의 재료로 이용한다고 결정한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소수에 불과하다. WIPO는 또 각국 특허당국의 심사결과에 대한 공유 및 세계 특허도 추진한다. 공통의 특허 처리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특허는 각 국가별로 출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모델 특허 등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복수국가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그것으로 관찮은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 등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WIPO는 심사 결과의 교환 및 가맹국 간의 공유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특허 제도의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 국가에서 특허가 성립되면 국제적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는 「세계 특허」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세계 경제계는 인터넷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활동도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특허 제도는 시급한 과제라며 환영하고 있다.